

‘발명교사인증제’ 마스터 인증 시행 계획(안)

□ 목 적

-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사로서, 학생·교원·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도하며, 발명교육 관련 연구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를 발굴하여 양성함

□ 추진 개요

- 초·중등 학교교육에서의 체계적 발명교육과 교사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「발명교사인증제」 도입
 - * [1급/마스터] 우수 발명교사 발굴 및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, [2급] 발명교육 저변확대
- 제1회 발명교사인증제 시행('14. 1. 25.)으로 56명의 1급 발명교사 인증
- 1급으로 인증 받은 발명교사를 대상으로 마스터 인증 시행

□ 제 2회 발명교사인증제 추진 계획(안)

일 자	내 용	비 고
'14. 1. 25.	제1회 발명교사인증제 시행	56명 합격(1급 인증)
'14. 5월~6월	1·2차 인증협의회 개최	제 2회 발명교사인증제 시행 내용 협의
'14. 7월~8월	발명교사인증제 설명회	발명교사교육센터 현직교원 직무연수
'14. 10. 20.	제2회 발명교사인증제 시행 공고	홈페이지 공고 및 시·도교육청 홍보
'14. 11. 25.	마스터 인증 시행 안내	1급 발명교사(56명 개별통보)
'14. 12. 1.	마스터 인증 신청 접수	접수기간 : 12/1 ~ 12/19
'15. 1월 초	서류심사(최종)	인증협의회 개최
'15. 1월 초	면접시험 준비	마스터 인증협의회
'15. 1. 20.(예정)	마스터 면접 실시	추후 공지
'15. 2월(예정)	최종합격자 발표	시·도 교육청 송부

□ 발명교사인증제 마스터 인증절차 및 역할

○ 인증절차(마스터)

단 계	내 용	주 체	비 고
①신청/접수	○[공고] 검정시험 2개월 전 ○[접수처]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영재교육연구원	한국발명 진흥회	2014. 10. 20. 공고
②인증조건 심사	○[서류심사] 등급별 응시기준 충족 심사 ○[검정시험] 대상자 통보 (발명진흥회→응시자)		
③검정시험	○ 발명교사인증 검정시험 통과자	한국발명 진흥회	1회 발명교사인증제 발명교사 1급 합격자
④심층면접	○[면접심사] 발명교사인증협의회에 의한 심층면접 심사	한국발명 진흥회	사전 면접일자 통보
⑤ 발명교사 인증	○ 합격자 발명교사로 인증(인증서 발급) ○ 발명교사인증 결과를 개인 및 시·도 교육 청에 통보	특허청	
⑥인증 관리	○[관리] 취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○[보수교육] 매 5년마다 연수	한국발명 진흥회	
	○ 증명서 발급 / 재발급 등 관련 업무 수행		

※ 갱신주기는 5년으로 하고, 방법은 별도 보수계획에 의거 시행 예정

※ 마스터 인증절차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·관리함

□ 발명교사인증제 접수방법 및 문의처

○ 접수방법

- 한국발명진흥회(www.kipa.org)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을 클릭 후
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
- 첨부를 참조하여 인정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

○ 접수처

- 증빙서류를 제출기한 내 우편 또는 직접 제출

* 제출처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
발명영재교육연구원 발명교사인증제 담당자(02-3459-2919)

□ 등급별 응시기준

구 분	필수영역		선택영역				검정시험
	발명교육 이수실적(누적)	발명교육 실무경력	발명대회 입상 지도	발명교육 강의실적	연구·특허 실적	비고	
2급	4학점 또는 60시간 (필수 : 집합교육 30시간 이상)	-	-	-	-	-	2급 검정시험
1급	연수 120시간 이상 (필수 : 집합교육 60시간 이상)	3년	5건	20시간	150%	2항목 충족	1급 검정시험
마스터	연수 180시간 이상 (필수 : 집합교육 120시간 이상)	7년	10건	40시간	300%	2항목 충족	1급 검정시험 통과자

□ 응시기준별 인정범위

○ 필수영역

응시기준	인정범위	증빙자료
필수영역	<p>※ 이수실적에 관한 기간 상정 연한 없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체 이수 실적 중 등급별 최소 필요한 필수 집합연수 이수시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2급) 30시간 이상, (1급) 60시간 이상, (마스터) 120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함 원격교육시수 만으로는 인정 불가 원격교육시수는 이수 시간의 50%만 인정 (예: 원격연수 60시간 이수 시, 발명교육 이수실적 30시간으로 인정) <p>① 특허청 발명교육센터 발명지도자과정 집합연수 ※ 국제지식재산연수원 http://iipiti.kipo.go.kr</p> <p>② 시·도 교육청 및 시·도 교육청 위탁 발명(영재)교사 집합연수</p> <p>③ 특허청·한국발명진흥회 위탁 발명(영재)교사 집합연수 ※ 교·사대에 설치한 발명교사교육센터의 직무연수과정 ※ http://www.ip-edu.net/ → 발명교사인증 → 발명교사교육센터</p> <p>④ 한국발명진흥회 원격교육연수원의 발명(영재)교육교사 연수 ※ 아이피티처 http://www.ipteacher.net</p> <p>⑤ 특허청·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표준교재로, 학부 및 대학원에서 2개 과목 4학점 이상 수강한 중에서 C학점 이상 ※ 예비교사의 학점과 현직교사의 연수실적 연계가능(1학점=15시간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원인사기록 카드 또는 해당교육기관 교육이수증명서 대학교(원) 성적증명서
	발명교육 실무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허청 지정 발명교육센터 (구, 발명교실) 시·도교육청 지정 발명영재학급, 발명영재교육원 ※ 「주와 부 발명교사」는 동일하게 인정하나, 강사는 불인정 일반학교 자체 발명반 및 교내 발명동아리 (50% 인정) ※ 1회성 캠프 교육은 불인정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 운영위원 (50% 인정)

○ 선택영역

응시기준	인정범위	증빙자료
발명대회 입상 지도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앙부처*, 시·도 교육청에서 주최한 발명대회 수상 *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,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※ 중앙부처 주최 대회의 경우는 시·도교육청 예선대회 수상 실적 포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결과공문 또는 • 상장 (원본대조필 및 지도교사 명시)
(외부기관) 발명강의 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발명교육 강의실적은 교사, 학부모, 일반인 대상의 강의 • 특허청 발명교육센터의 발명(영재)교사(원) 집합연수 강의 • 시·도 교육청의 발명(영재)교사(원) 집합연수 강의 •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위탁한 대학 등에서의 발명(영재)교사(원) 집합연수 강의 • 한국발명진흥회 원격교육연수원의 발명(영재)교사(원) 집합연수 강의 • 대학/대학원에서의 발명(영재) 강의 • 발명교육기관(발명교육센터, 발명영재학급/교육원)의 강의 ※ 인정불가 : 사이버교육 튜터, 초·중·고등학생대상 강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교육기관 강의경력확인서
선 택 영 역 발명교육 연구·특허 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·도교육청에서 인정 및 선정된 발명연구과제 • 발명교육 연구(시범)학교 결과물 ※ 1인(70%), 2인(50%), 3인 이상(30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·도교육청 연구과제 선정결과 공문 및 결과보고서 1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허 등록 건수 : 1건(100%) • 실용신안 등록 건수 : 1건(100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허증 • 실용신안등록증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KCI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(70%) - 2인(주저자/교신저자 50%, 공동저자 30%) - 3인 이상(30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별쇄본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석사학위 (발명교육분야) : 150% • 박사학위 (발명교육분야) : 300% ※ “발명교육분야” 인정범위는 인증협의회 심사를 통해 인정 • 전국교원 발명품 경진대회 수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상, 은상, 동상, 특별상(70%) - 장려상(50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위증명서 • 학위논문 1부 • 상장 사본 (원본대조필)